

서울特別市永登浦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제 출 년 월 일 : 1992. 6. 26.

제 안 자 : 행정재무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6월 5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2년 6월 19일

다. 상정일자 : 제1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92. 7. 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金榮俊)

가. 제안이유

- 공무원 임용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치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근무상한 연령의 연장조항을 신설함 (안 제7조)
- 별정직 임용자격 기준을 강화함 (일반직 승진 소요년수와 균형유지) (안 별표)
- 정원 감축된 전산직종의 임용자격 기준을 삭제함 (안 별표1)

3.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金熙中)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법령의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우리구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조례 제2조(적용범위) 제1항을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가. 비서관 나. 동장 다. 법령 및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한 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례 제2조 2항을 보면 동장인 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9조(하부 행정기관의장의 임명) 제2항의 규정 (동장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구청장이 임명한다)에 의하여 규칙 (동장임용등에 관한규칙, '88. 5. 7)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과 불합리함으로, 동조례 제2조 1항중에서 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하고자 하는 바 이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둘째, 현행조례 제7조(근무상한 연령) 제1항을 보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지방공무원법 제66조 4항 ('91. 5. 31 개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2(정년의 연장)의 1항 ('91. 6. 27 개정)의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근무상한연령의 연장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셋째, 현행조례 제4조(임용자격) 2항 규정을 보면, 법 제2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중 일반직 해당 직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승진소요 최저연수) 1항 1호 ('91. 6. 27 개정) 개정으로 일반직공무원승진소요 최저연수가 9급은 2년이상, 7급 및 8급은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도 개정조례(안) 제7조 “별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화하여 일반직 승진소요 연수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넷째, 현행조례 제4조 3항의 “별표 1”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서 전산분야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공무원의 직급 구분등) 3항의 “별표 2”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가 '91. 12. 31 개정됨으로 인해 별정직 공무원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산분야는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서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별정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심 사 결 과 : 원안대로 가결

(재적의원 11명

- 출 석 10명
- 찬 성 10명
- 반 대 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特別市永登浦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7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고, 근무상한 연령연장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1> 제1호중 화생방지도원란의 6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2호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별표1> 제2호중 전산처리사란, 기계처리사란, 전산전기기사란, 전산기계기사란, 천공원란을 삭제한다.

<별표1> 제3호중 부녀상담원란의 6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4호중 “2년”을 “3년”으로, 동란의 7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3호의 “2년”을 “3년”으로, 동란의 8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3호의 “1년6월”을 “2년”으로, 가정상담원란의 6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3호중 “2년”을 “3년”으로, 동란의 7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3호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별표1> 제6호중 지도사란의 6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3호중 “2년”을 “3년”으로, 동란의 7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4호중 “2년”을 “3년”으로, 공과금융원란의 8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2호중 “1년6월”을 “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特別市永登浦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의안 번호	75
----------	----

제출년월일 : 1992년 6월 5일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공무원 임용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치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 6급상당이하 별정직 근무상한 연령의 연장조항을 신설함 (안 제7조)
- 별정직 임용자격 기준을 강화함(일반직 승진소요 연수와 균형유지) (안 별표1)
- 정원 감축된 전산직종의 임용자격 기준을 삭제함 (안 별표1)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별 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特別市永登浦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7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고, 근무상한 연령연장은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1〉 제1호중 화생방지도원란의 6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2호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별표1〉 제2호중 전산처리사란, 기계처리사란, 전산전기기사란, 전산기계기사란, 천공원란을 삭제한다.

〈별표1〉 제3호중 부녀상담원란의 6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4호중 “2년”을 “3년”으로, 동란의 7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3호의 “2년”을 “3년”으로, 동란의 8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3호의 “1년6월”을 “2년”으로, 가정상담원란의 6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3호중 “2년”을 “3년”으로, 동란의 7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3호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별표1〉 제6호중 지도사란의 6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3호중 “2년”을 “3년”으로, 동란의 7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4호중 “2년”을 “3년”으로, 공과금요원란의 8급상당란의 임용자격란 제2호중 “1년6월”을 “2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1)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1. 비상대비업무분야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화생방 지도원	6급 상당	(생략)	1. (생략) 2. 화생방요원(7급상당)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	

2. 전산분야

3. 부녀청소년, 아동복지분야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부녀 상담원	6급상당 (수석 상담원)	(생략)	1~3 (생략) 4. 부녀상담원(7급이상)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7급상당 (일반 상담원, 윤락여성 상담원)	"	1.~2(생략) 3. 부녀상담원(8급상당)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8급상당 (")	"	1.~2(생략) 3. 부녀상담원(8급상당)으로 1년6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별표1) (현행)

1. (현행)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화생방 지도원	6급 상당	(현행)	1. (현행) 2.3 년.....	

2. (삭제)

3. (현행)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무내용	임용자격	근거
부녀 상담원	6급상당 (수석 상담원)	(현행)	1~3 (현행) 4.3 년.....	
"	7급상당 (일반 상담원, 윤락여성 상담원)	(*)	1.~2(현행) 3.3년	
"	8급상당 (")	(*)	1.~2(생략) 3.2 년.....	

현행					개정안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내무용	임용자격	근거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내무용	임용자격	근거
가정상담원	6급상당 (수석상담원)	(생략)	1~2. (생략) 3. 가정상담원(7급이상)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가정상담원	6급상당 (수석상담원)	(현행)	1~2. (현행) 3.3 년.....	
	7급상당 (일반상담원) ('88.8.16 신설)	(생략)	1~2. (생략) 3. 가정상담원(8급이상)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급상당 (일반상담원) ('88.8.16 신설)	(현행)	1~2. (현행) 3.3 년.....	

6. 행정관리분야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내무용	임용자격	근거
지도사	6급상당 (진홍계장)	(생략)	1~2 (생략) 3. 일반직 7급(별정직 7급상당 포함)으로 2년 이상 전전생활 분야 행정근무 경력자 4. (생략)	
	7급상당	(생략)	1~3 (생략) 4. 일반직 8급으로 2년이상 전전생활분야 행정근무 경력자	
공과금요원	8급상당	(생략)	1. (생략) 2. 9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과금경력이 1년6월이상인 자	

6. (현행)

직명(위) 및 업무구분	직급	직내무용	임용자격	근거
지도사	6급상당 (진홍계장)	(현행)	1~2 (현행) 3.3년 4. (현행)	
	7급상당	(현행)	1~3 (현행) 4. 3년.....	
공과금요원	8급상당	(현행)	1. (현행) 2.2년.....	